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15일, 김한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2회국회(임시회)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

-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6. 3. 24.)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한규)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은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1)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u><신 설></u>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으로서</u>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u>제4항제2호</u>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u>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3. ----- ----- <u>사람</u> <u>중에서</u> ----- ----- ⑤ <u>제4항제2호 및 제3호</u> ----- -----. ⑥·⑦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현행법²⁾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의 임기는 2년임.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 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2026년 1월 현재 제3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⁴⁾의 위원은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7명임.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⁵⁾,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위원회⁷⁾ 등의 경우 시·도지사 협

4) 위원의 임기 : 2024년 2월 ~ 2026년 2월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가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경우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시·도지사 협의체가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도지사 협의체가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을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 위원 구성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u><신설></u>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u>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u>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u> ----- ----- ----- ----- ----- ----- 3.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⑤ (생략)	3. (생략) ⑤ (생략)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 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u>위원회에</u>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 항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 ⑦ (현행과 같 음)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u>위원회</u> <u>위원</u> <u>구성</u>에 관한 적용 례) ----- ----- ----- -----.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u><신 설></u>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 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 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2. <u>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u>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사 람 중에서----- -----
⑤ <u>제4항제2호</u>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u>제4항제2호 및 제3호</u>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